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994. 6. 24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 :

○ 제 출 일 자 : 1994년 6월 17일

○ 회 부 일 자 : 1994년 6월 17일

3. 제 안 이 유 :

○ 대통령령 제14,262호('94. 5. 16)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과의 복무형평을 기하고자 함.

4. 주 요 골 자

○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8조제2항)

○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(안 제21조)

○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 (안 제24조)

○ 특별휴가에 있어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,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백숙부모 사망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를 특별휴가 사유에 각각 추가함. (안 별표 2)

5. 검토 의견

○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,

대통령령 제14,262호 ('94. 5. 16)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

-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연가일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토록 하고,
- 공가 허가사유에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 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때 직접 필요한 기간을 추가토록 하였으며,
-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토록 한것은

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은 물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공무원들의 견문과 지식을 높일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이며,

- 특별휴가에 있어서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 배우자 형제자매와 백숙부모 사망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를 특별휴가 사유에 추가한 것은 공무원 본인측과 배우자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맞추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사료됨.

6.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: 별 첨